

#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장 김진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용역 결과물의 제출 방법 및 시기,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용역 결과물 중복 제출 규정 삭제 및 결과물의 즉각적인 결과 공개로 용역 중복수행 사전 방지 강화(안 제16조제1항)
- 용역 결과물의 공개 범위 확대(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 방지 등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장 김진관)

### 가. 제안이유

- 민선8기 ‘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’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구 구성 및 합리적 사무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- (4급) 국(局) 단위 개편

1) 명칭변경: 7실국소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본청<br>(3)   | 1) 일자리경제국 ⇨ <b>민생경제산업국</b> 2) 문화관광교육국 ⇨ <b>여가문화교육국</b><br>3) 복지국 ⇨ <b>시민복지국</b>      |
| 직속기관<br>(3) | 1) 화성시보건소 ⇨ <b>화성시서부보건소</b> 3) 동탄보건소 ⇨ <b>화성시동탄보건소</b><br>2) 동부보건소 ⇨ <b>화성시동부보건소</b> |
| 사업소<br>(1)  | 1) 푸른도시사업소 ⇨ <b>공원녹지사업소</b>  |

- (5급) 과(課) 단위 개편

1) 신 설: **4과**

|           |   |
|-----------|---|
| 본청<br>(4) | 1) <b>소통혁신담당관</b> (시장 직속)    3) 시민복지국 <b>청년청소년정책과</b><br>2) 민생경제산업국 <b>기업정책과</b> 4) 교통도로국 <b>부동산관리과</b> |
|-----------|---|

2) 폐지 및 통합: 3과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본청<br>(3) | 1) 홍보기획관 + 언론담당관(폐지) ⇨ 홍보담당관  |
|           | 2) 소상공인과 + 일자리정책과(폐지) ⇨ 경제정책과 |
|           | 3) 평생학습과 + 교육청소년과(폐지) ⇨ 평생교육과 |

3) 명칭변경: 12과

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본청<br>(10) | 1) 전략사업담당관 ⇨ 미래비전담당관            | 6) 복지사업과 ⇨ 생활보장과     |
|            | 2)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⇨<br>기획조정실 군공항대응과 | 7) 여성가족과 ⇨ 여성다문화과    |
|            | 3) 스마트시티과 ⇨ 스마트도시과              | 8) 아동보육과 ⇨ 영유아보육과    |
|            | 4) 세정1과 ⇨ 세정과                   | 9) 아이사랑담당관 ⇨ 아동친화과   |
|            | 5) 세정2과 ⇨ 도세관리과                 | 10) 노인복지과 ⇨ 중장년노인복지과 |
| 사업소<br>(2) | 1) 공원관리1과 ⇨ 서부공원관리과             | 2) 공원관리2과 ⇨ 동부공원관리과  |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기구개편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정책기획과장 김진관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민선8기 ‘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’ 주요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합리적 인력배분을 통해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.

#### 나. 주요내용

○ 집행기관의 정원을 2,789명에서 2,786명으로,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40명에서 43명으로 조정(안 제2조)

○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조정(안 제3조, 안 별표 2)

○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4조, 안 별표 3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○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원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통·리·반 설치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#### 가. 제안이유

- 택지개발 및 주택 신축 등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, 조례상 통·리·반의 지번오류(누락) 등이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(통·리·반)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별표 1 개정안
  - 봉담읍 상10리 관할구역 조정 및 수영13리(11개 반), 상11리(10개 반), 상12리(5개 반), 동화13리(8개 반) 신설
  - 남양읍 남양28리(8개 반), 남양29리(7개 반), 남양30리(7개 반) 신설 및 남양26~27리 표기정정
  - 비봉면 양노1리 3~6반 신설 및 관할구역 조정, 삼화1~3리, 구포3리 관할구역 조정, 구포4~5리 표기정정
  - 반월동 반월25통(6개 반), 반월26통(6개 반), 반월27통(4개 반), 반월28통(4개 반), 반월29통(4개 반) 신설
  - 동탄1동 7통, 12통 표기정정
  - 동탄2동 11~13통 표기정정

- 동탄5동 영천20통 관할구역 조정 및 영천36통(6개 반), 영천37통(1개 반) 신설
- 동탄7동 산척26통(2개 반) 신설 및 신5통 7반 표기정정

○ 별표 2 개정안

- 봉담읍 상리 통리장 정수 2명 및 수영리 통리장 정수 1명 및 동화리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- 남양읍 남양리 통리장 정수 3명 증원
- 반월동 반월동 통리장 정수 5명 증원
- 동탄5동 영천동 통리장 정수 2명 증원
- 동탄7동 산척동 통리장 정수 1명 증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운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행정구역을 효율적·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 화성시 읍·면·동·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2. 11. 11. 화성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11. 14.

다. 상 정 일 자 : 제21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2. 11. 25. 상정, 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자치행정과장 박형일)

### 가. 제안이유

- 비봉 공공주택지구(비봉면 삼화리, 구포리 일원) 사업부지에 대해 획지 계획 등에 맞춘 법정동·리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.

### 나. 주요내용

- 비봉 공공주택지구의 획지계획 및 효율적 행정관리를 고려한 비봉면 삼화리-구포리 간 경계조정 반영(안 별표1 비봉면의 삼화리의 관할구역란 및 비봉면 구포리의 관할구역란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윤정자)

-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비봉 공공주택지구의 획지계획 및 효율적 행정관리를 고려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 : 생략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